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vpass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410호 (여의도동, 동북빌딩)
(전 화) 02-761-7649

대 표 이 사 : 윤 종 업, 김 봉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성 희 (전 화) 02-761-7648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유 아 름 (전 화) 02-761-764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1호)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2. 원고·신청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외 2인
3. 청구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주주제안을 반영할 것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여부 결정
6. 제기일자	2023. 03. 03
7. 확인일자	2023. 03. 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 당사 외 2인은 KISCO홀딩스(주)의 2022년 회계연도(주총개최 예정일: 2023. 03. 24.)정기주주총회 결의 상정안건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행사하였음.</p> <p>-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동법 제542의6(소수주주권)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설명) 없이 이를 묵살하여 법에 허용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처하였음.</p> <p>- 본 건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그 효력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의안상정가처분소송임.</p>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